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
전화 032-860-4340

2025. 2. 10.(월)

[주책임자]
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
박성민 (032-860-4202)

10만명 투약분 마약류 밀수·유통 사범 적발

- 땅에 파묻어 은닉한 필로폰 3kg 등 총 7.4kg 압수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6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박성민)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로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**케타민* 2.9kg**을 적발하여 압수하고,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려고 하였던 **밀수 수령책 2명**을 검거하여 '25. 1.경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* 케타민 :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, 젊은 층 사이에서 '클럽 마약'으로 오·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

- 또한 밀수 수령책에 대한 추가 수사로 **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캐리어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·대마**를 수거한 후 거주지 인근 **공원에 묻어 은닉해 두었던 운반책 1명**을 추가로 검거하여, 오늘(2. 10.) **구속 기소**하고 범행을 도운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이 사건 수사로 공항에서 적발된 **케타민 2.9kg**과 운반책이 땅에 묻어 은닉한 **필로폰 3kg** 및 **대마 1.5kg** 등 **총 7.4kg**의 마약류를 **전량 압수**하여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.

※ 압수된 마약류는 합산하여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소매가 합계 약 18억 5,000만 원 상당임(1회 투약분 필로폰 0.03g, 대마·케타민 0.5g 기준)

-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**마약 수사**의 **1차 관문**으로,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, **대한민국을 마약 범죄로부터 수호**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| 순번 | 피고인 | 역할 | 공소사실 요지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 | A (33세) | 밀수 수령책 | -'24. 12. 11. B 등과 공모하여, 프랑스에서 케타민 2,989.19g 밀수 | '25. 1. 3. 구속 기소 |
| 2 | B (여, 25세) | 밀수 수령 및 국내 운반책 | -'24. 12. 11. A 등과 공모하여, 프랑스에서 케타민 2,989.19g 밀수 -'25. 1. 6.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 2,122g, 대마 1,533g 숨겨두어 C에게 전달 | '25. 1. 24. 구속 기소 '25. 2. 10. 추가 기소 |
| 3 | C (51세) | 국내 운반책 | -'24. 12. 31. 불상자가 골목 구석진 곳에 둔 여행용 캐리어 안에 숨긴 필로폰 884.3g을 수거하여 공원에 묻어 은닉 -'25. 1. 6. B가 숨겨둔 필로폰 2,122g, 대마 1,533g D를 통해 수거하여 공원에 묻어 은닉 | '25. 2. 10. 구속 기소 |
| 4 | D (여, 33세, C의 아내) | 국내 운반책 | -'25. 1. 6. B가 숨겨둔 필로폰 2,122g 및 대마 1,533g을 꺼내와 C에게 전달 | '25. 2. 10. 불구속 기소 |

2

주요 수사경과

- '24. 12. 11. 프랑스 發 케타민 2,989.19g 적발(압수)
- '24. 12. 17. A 체포 [→ '25. 1. 3. 구속 기소]
- '25. 1. 15. B 체포 [→ 1. 24. 구속 기소(케타민 밀수)]

※ B가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밀수 범행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여, 국내 유통 범행에 관한 수사 착수 → 국내 운반책 C 특정

- '25. 1. 21. C 체포
- '25. 1. 21.~23. C가 숨겨 둔 필로폰 3006.3g, 대마 1,533g 압수

※ C가 인천 주거지 인근 공원 땅에 묻어 두었던 필로폰 및 대마 전량을 압수

- '25. 2. 10. C 구속 기소, D 불구속 기소, B 추가 기소

▣ 긴밀한 공조로 마약 밀수 사범 신속 검거

-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 밀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알루미늄 캔에 숨겨서 밀수된 케타민* 2.9kg을 전량 압수하고, 밀수 사범 2명(A·B)을 신속히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였음

* 케타민 :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, 젊은 층 사이에서 '클럽 마약'으로 오·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

- 필로폰·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, 주로 술·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,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'몰래뽕'으로 악용되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음

▣ 치밀한 수사로 대규모 마약류 추가 압수 및 유통차단

- 밀수 수령책에 대한 추가 수사로, 공중화장실과 골목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과 대마를 수거한 후 주거지 인근 공원 땅에 묻어 은닉한 운반책 1명을 추가로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고, 그 범행을 도운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이 사건 수사로 공항에서 적발된 케타민 약 2.9kg, 운반책이 땅에 묻어 은닉한 필로폰 약 3kg 및 대마 약 1.5kg 등 총 7.4kg의 마약류를 전량 압수함으로써 마약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음

※ 압수된 마약류는 흡산하여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, 소매가 약 18억 5,000만 원 상당임(1회 투약분 필로폰 0.03g, 대마·케타민 0.5g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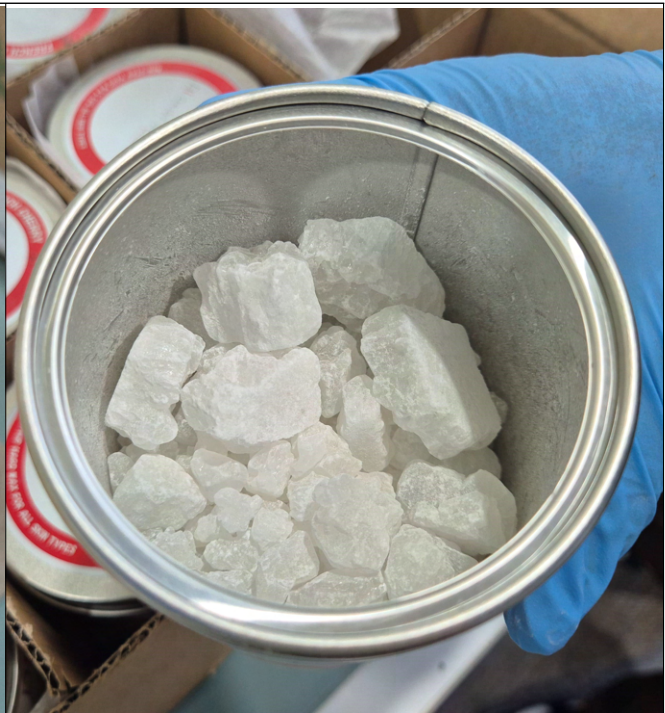
▣ 향후 계획

- 최근 적발되는 마약류 규모가 점점 대량화되고, 밀수·유통 사범들이 점조직화되고 있어 밀수·유통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
-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마약 수사의 1차 관문으로서,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, 대한민국을 마약 범죄로부터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☑

[별첨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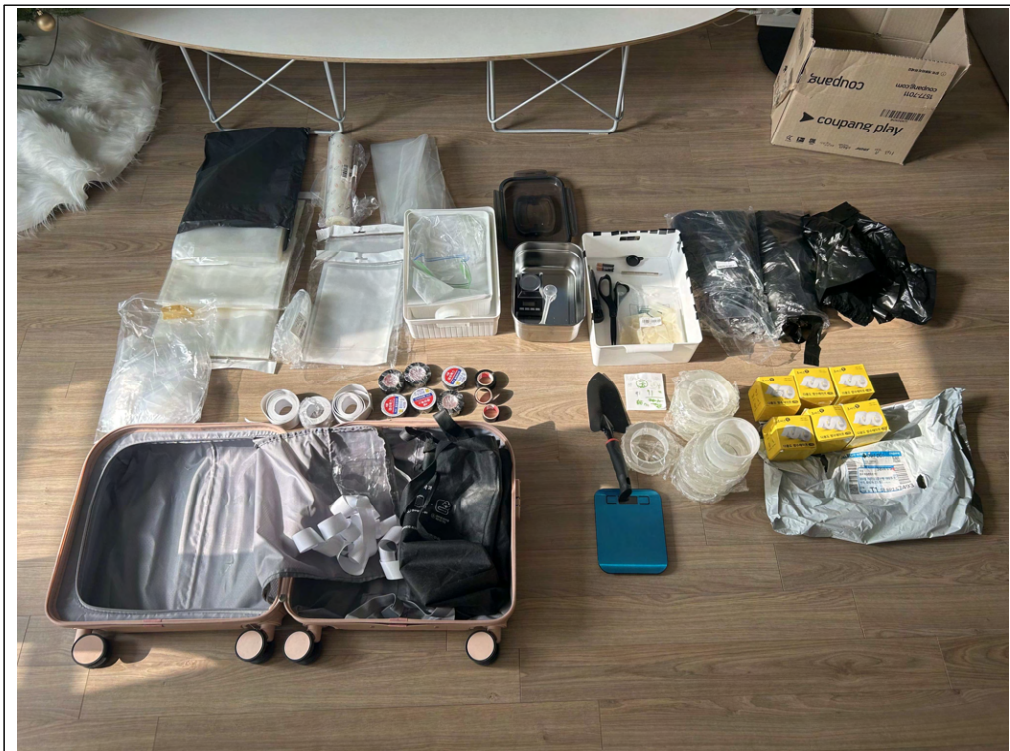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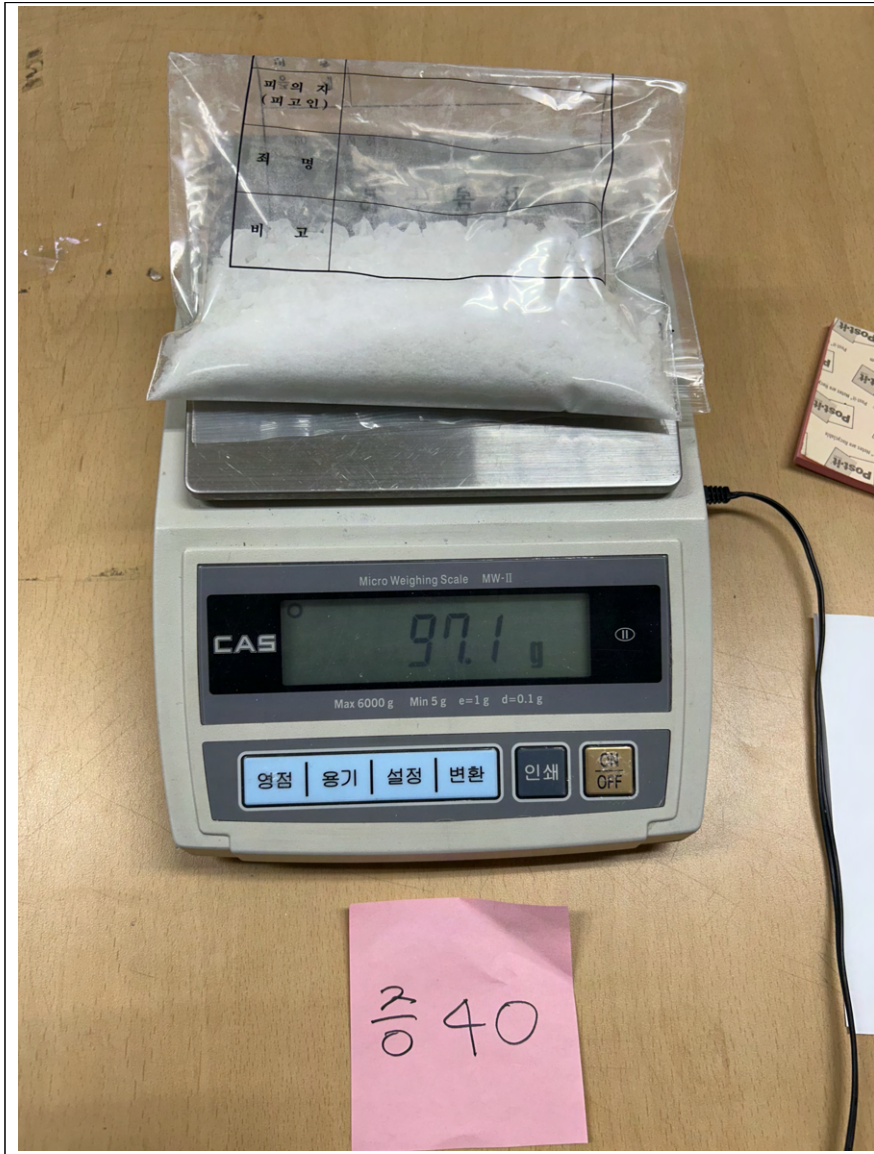
<압수물 사진>

1. 케타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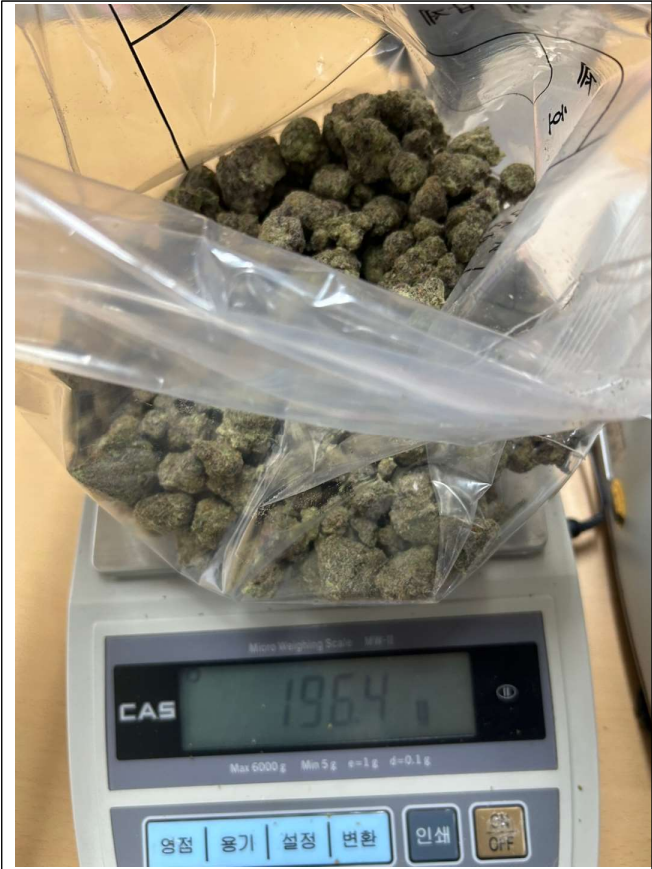


2. 필로폰 및 마약류 소분 도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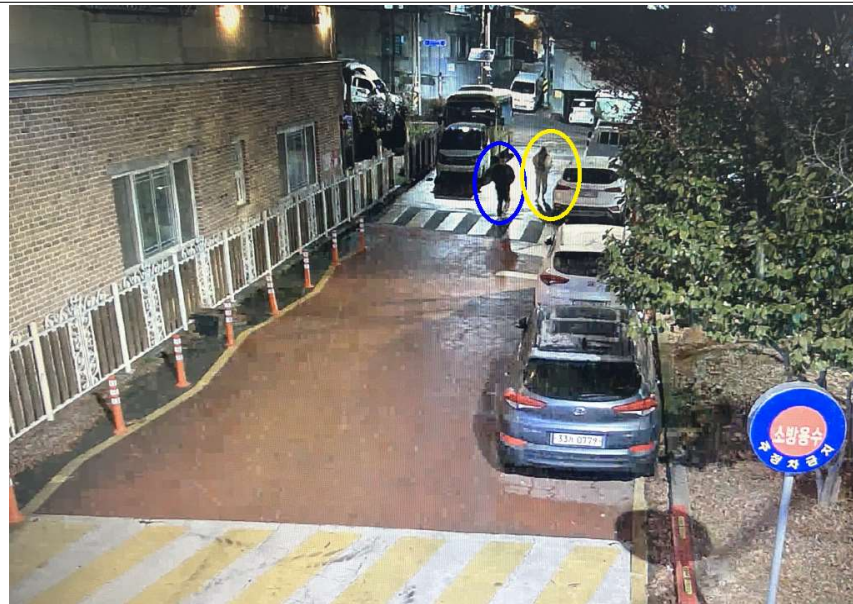




3. 대마



<범행 장면>



<마약류 수거 장면>

